KOSHA GUIDE

C - 91 - 2015

- (1) 화재종합방재실은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화재종합방재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 - (가) 조명설비(예비전원을 포함한다) 및 급수·배수 설비
 - (나)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
 - (다) 급기·배기 설비 및 냉방·난방 설비
 - (라)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
 - (마) 공기조화·냉난방·소방·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
 - (바) 자료 저장 시스템
 - (사)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(無停電) 전원공급장치
- (3) 피난안전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 - (가)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
 - (나) 방독면
 - (다) 화재종합방재실과의 통신설비
 - (라) 소화설비
 - (마) 배연설비(외부 마감이 완료되어 구획이 된 경우에 한함)



<사진 1> 화재종합방재실 전경



<사진 2> 피난안전구역의 구호장비

(4) 소화기구의 설치는 건축물·공작물, 전기실·전산실, 통신기기실, 특수가연물 (가연성 고체 및 액체, 합성수지 등), 가연성 가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정한 소화성능을 갖는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.